

김천시와 대구대학교간의 행·학 교류협력 협정서

김천시와 대구대학교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동의 관심분야에 대한 행·학 교류협력을 통하여 상호발전 및 이해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정은 김천시와 대구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하여 교류협력 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정사업) 김천시와 대구대학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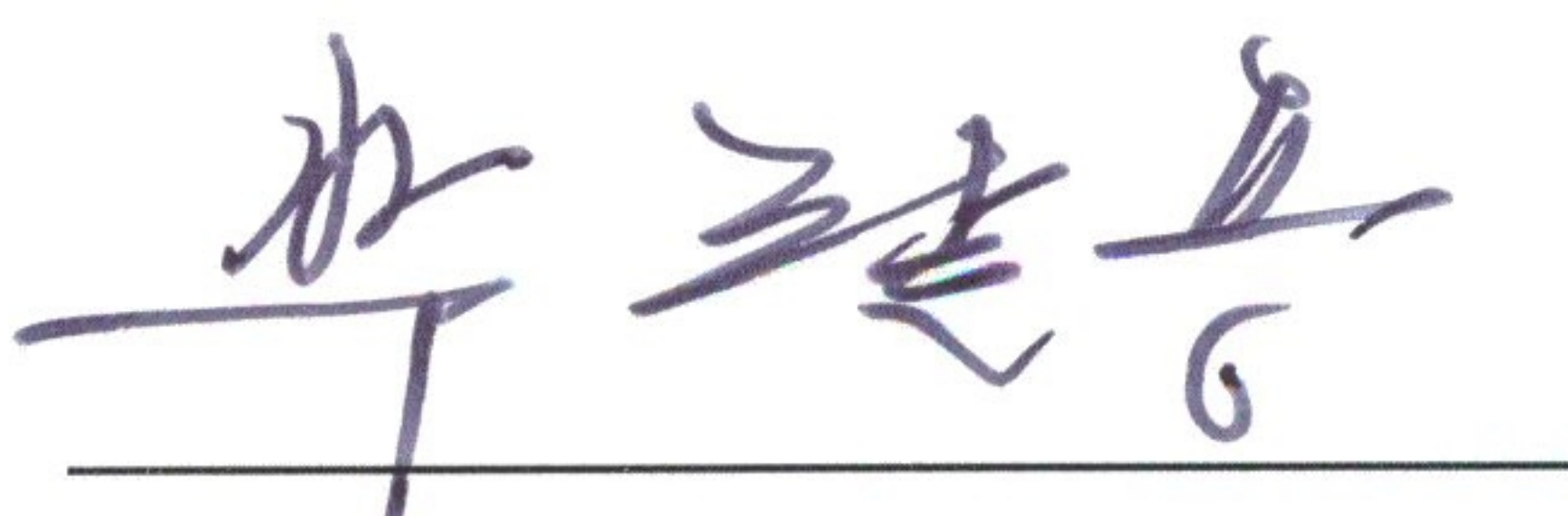
1. 대구대학교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김천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며, 김천시가 필요로 하는 공동연구 및 정책대안 개발을 위하여 협조한다
2. 대구대학교는 김천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참여하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.
3. 김천시와 대구대학교는 학술회 개최, 학술정보 및 출판물의 교환, 기타 정보의 교환에 상호 협조한다.
4. 소속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필요시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,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협력한다.
5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.

제3조(행·학협력위원회구성) 교류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·학 교류협력 위원회를 구성한다.

제4조(신의 성실의 원칙) 본 교류협정은 상호 신의·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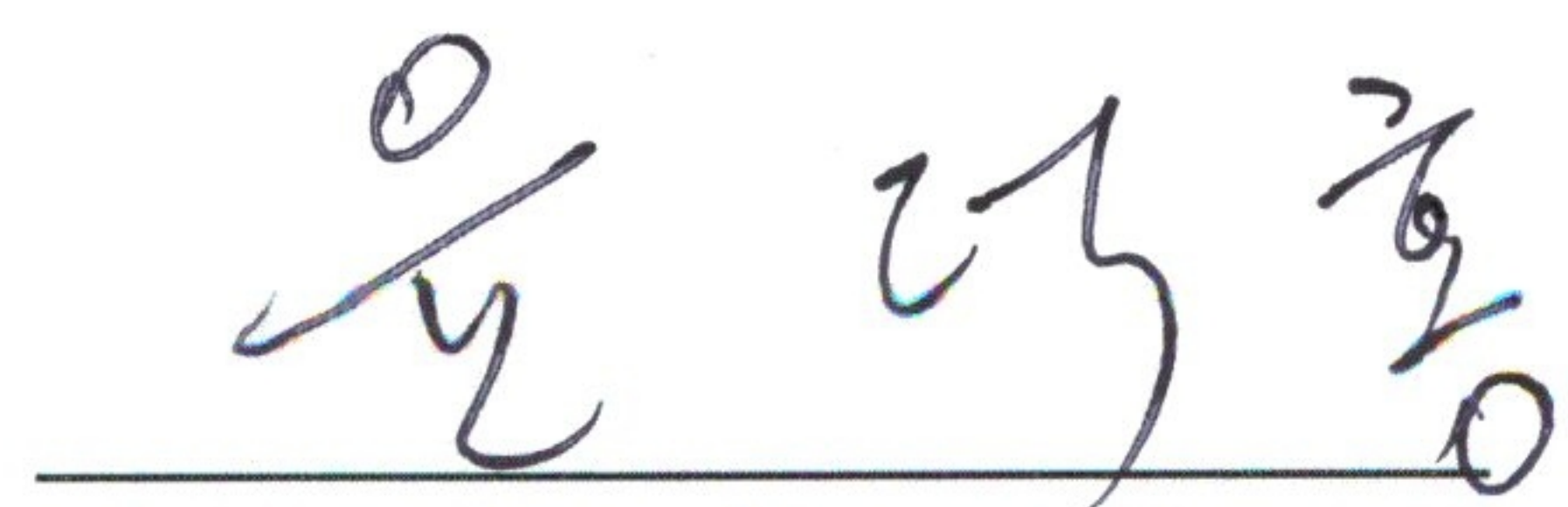
제5조(협약서의 효력) 본 협정서는 양 기관의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, 일방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5년의 단위로 자동연장 된다.

2001. 3. 12



김천시장

박팔용



대구대학교 총장

윤덕홍